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1호 2018. 3. 2(금)

선 람	기관의장

훈령

○남원시 훈령 제386호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규정 ----- 1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8- 27호 소규모 위험시설(변경) 지정·고시 ----- 5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361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 8
- 남원시 공고 제2018- 378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13
- 남원시 공고 제2018- 382호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 신청 추가 모집공고(안) 공고 ----- 19
- 남원시 공고 제2018- 383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25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3월 02일

남원시 훈령 제 386 호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원고료)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료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기준단가(1시간)		실비보상금
		기본료	초과	
특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 1급이상 공무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 총장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의 장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동등 이상의 경력자 	300천원	200천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2·3급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공무원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원,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변리사·의사·한의사(5년 이상 경력자) - 공인연구소 연구위원(3년 이상 경력자) - 컨설턴트(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시장이 인정한 사람 및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200천원	100천원	"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4급 공무원 - 대학교의 전임강사 - 어학강사 - 특별 및 1·3급 외의 강사 	130천원	70천원	"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산강사 	80천원	40천원	"
보조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 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50천원	20천원	주강사 실비보상금 준용
별도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특별강사 실비보상금 준용

[별표 5]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고료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 2면을 A4용지 1매로 계산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시 미지급
지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u>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규정함</u> -----.</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외래강사”라 <u>함은</u>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에 출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운영수당”이라 <u>함은</u> 강사료, 실비보상금, 원고료를 말한다.</p> <p>3. “보조강사”라 <u>함은</u> 주장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장사의 교육진행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 <u>란</u> ----- ----- -----.</p> <p>2. ----- <u>이란</u> ----- -----.</p> <p>3. ----- <u>란</u> ----- ----- ----- ----- ----- -----.</p>
<p>제4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 ----- 「<u>공무원 여비 규정</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원고료) <u>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원고료는 별표 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남원시 고시 제2018 - 27호

소규모 위험시설 (변경)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남 원 시 장

1. 소규모 위험시설(변경) 지정 대상

- 붙임참조

2. 지정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 지정권자

- 남원시장

4.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 열람장소 비치

5. 열람장소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내역 1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내역

연번	시설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업량		사업추진계획
	구분	명칭					시작지점	끝나는지점	연장	폭	
1	소교량	매요 세월교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1021	1021	25.0	2.5	2019년 이후 추진
2	농로	덕산 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43	1143	50.0	2.5	2019년 이후 추진
3	농로	권포 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746-18	746-18	80.0	2.5	2019년 이후 추진
4	마을진입로	새연동진입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46-1	46-1	30.0	4.0	2019년 이후 추진
5	세천	내기마을세천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75	산75	400.0	2.0	2019년 이후 추진
6	세천	방죽골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588	588	450.0	1.5	2019년 이후 추진
7	소교량	회덕마을세월교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덕지리	596	596	30.0	3.0	2018년 이후 추진
8	소교량	하주교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1189	1189	25.0	3.0	2019년 이후 추진
9	소교량	상주교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771-3	771-3	25.0	3.0	2019년 이후 추진
10	세천	신기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663	663	500.0	2.0	2019년 이후 추진
11	세천	내송마을 뒷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은승리	612-83	612-83	270.0	1.5	2019년 이후 추진
12	세천	내기마을세천2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62-1	산62-1	100.0	1.5	2018년 이후 추진
13	세천	제바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78	378	100.0	1.5	2019년 이후 추진
14	세천	안곡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585	585	100.0	1.5	2019년 이후 추진
15	세천	하주역양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1252	1252	1600.0	1.0	2019년 이후 추진
16	세천	외용궁세천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522	522	400.0	1.5	2019년 이후 추진
17	세천	외용궁세천2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527	527	200.0	1.5	2019년 이후 추진
18	농로	웅치언덕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지리	182-1	182-1	50.0	2.5	2019년 이후 추진
19	농로	고촌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858	858	100.0	3.0	2019년 이후 추진
20	마을진입로	웅치마을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지리	102-2	102-2	50.0	3.0	2019년 이후 추진
21	마을진입로	호곡마을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610	610	200.0	3.0	2019년 이후 추진
22	세천	양촌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381	1381	500.0	3.0	2019년 이후 추진
23	세천	내호곡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1192	1192	750.0	4.0	2019년 이후 추진
24	세천	산촌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950	950	1500.0	1.0	2019년 이후 추진
25	낙차공	유촌낙차공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873	873	9.0	2.0	2019년 이후 추진
26	세천	마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337	1337	600.0	4.0	2019년 이후 추진
27	세천	금절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764	764	800.0	3.0	2019년 이후 추진
28	농로	송기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636	636	150.0	1.0	2019년 이후 추진
29	농로	연산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288-3	294-7	100.0	3.0	2019년 이후 추진
30	마을진입로	송내마을진입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900	1060	250.0	0.5	2019년 이후 추진
31	소교량	내동마을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793	793	15.0	3.0	2019년 이후 추진
32	소교량	서재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1213	1213	25.0	5.0	2019년 이후 추진
33	마을진입로	내기마을진입로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856-16	856-16	30.0	3.0	2019년 이후 추진
34	마을진입로	입암마을진입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547-2	1040	200.0	3.0	2019년 이후 추진
35	세천	뽕골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52-1	산52-1	100.0	1.0	2019년 이후 추진
36	세천	수덕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99-2	599-2	100.0	2.0	2019년 이후 추진
37	농로	대곡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513-2	513-2	200.0	2.5	2019년 이후 추진
38	교량	감성마을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68	668	15.0	5.0	2019년 이후 추진
39	세천	계동마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산112	619-5	400.0	2.0	2019년 이후 추진
40	소교량	서도소교량 1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774-21	774-21	5.0	5.0	2019년 이후 추진
41	소교량	수동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621	621	50.0	3.0	2019년 이후 추진
42	소교량	서도소교량 2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774-21	774-21	5.0	3.0	2019년 이후 추진
43	세천	소남정뒷물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416	1416	500.0	2.0	2019년 이후 추진
44	세천	신정최금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029-6	1383	800.0	3.0	2019년 이후 추진
45	소교량	만동세월교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693-2	693-2	30.0	5.0	2019년 이후 추진
46	세천	비촌창촌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753-5	779	600.0	3.0	2018년 이후 추진
47	농로	수촌 장고개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993-3	산220	500.0	5.0	2019년 이후 추진
48	세천	사곡새터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70	5-2	500.0	3.0	2019년 이후 추진
49	농로	준우골진입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481-8	1415	400.0	6.0	2019년 이후 추진
50	세천	비촌금촌제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946	946	400.0	2.0	2019년 이후 추진
51	세천	작소줄골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1010	1013	400.0	2.0	2019년 이후 추진
52	소교량	도촌경작통학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898	898	10.0	5.0	2019년 이후 추진
53	소교량	배산횡단암거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1061	1061	10.0	2.0	2019년 이후 추진
54	농로	울천안동해골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83-8	683-8	200.0	5.0	2019년 이후 추진

55	취입보	추산남산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1051	1051	70.0	3.0	2019년 이후 추진
56	소교량	덕산제소교량(2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038	4047	5.0	3.0	2019년 이후 추진
57	소교량	부신대천암거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159	1159	5.0	3.0	2019년 이후 추진
58	소교량	수촌목골천암거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921-2	921-2	4.0	5.0	2019년 이후 추진
59	소교량	울천사울천암거(2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978-2	978-2	5.0	3.0	2019년 이후 추진
60	취입보	도촌앞울천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1120	1120	40.0	3.0	2019년 이후 추진
61	취입보	만동괴양제2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814-1	814-1	40.0	2.0	2019년 이후 추진
62	취입보	울천마을앞울천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947-6	947-6	40.0	3.0	2019년 이후 추진
63	취입보	작소앞울천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115	115	40.0	2.0	2019년 이후 추진
64	취입보	한국음료앞울천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88-10	88-10	40.0	3.0	2019년 이후 추진
65	취입보	만동괴양제1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307	307	30.0	2.0	2019년 이후 추진
66	낙차공	배산 서당낙차공(2개)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1055-6	1055-8	5.0	1.0	2019년 이후 추진
67	낙차공	신정 수외천낙차공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350-2	1350-2	5.0	2.0	2019년 이후 추진
68	소교량	수양촌진입암거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398	1407	3.0	3.0	2019년 이후 추진
69	취입보	도촌 다산 제1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1081	1081	10.0	1.5	2019년 이후 추진
70	취입보	도촌 다산 제2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1062	1062	10.0	1.5	2019년 이후 추진
71	취입보	도촌 다산 제3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894-74	894-74	20.0	2.0	2019년 이후 추진
72	취입보	신정수외천제1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333	333	5.0	1.5	2019년 이후 추진
73	취입보	신정수외천제2취입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349	1349	5.0	2.0	2019년 이후 추진
74	세천	진기앞뜰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1505-5	산120-1	600.0	2.0	2019년 이후 추진
75	소교량	부절 사정교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285-482	2285-482	25.0	5.0	2019년 이후 추진
76	소교량	목동 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543-162	543-162	9.0	4.0	2018년 이후 추진
77	소교량	중절 소교량1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39-4	1139-4	8.0	7.0	2018년 이후 추진
78	소교량	중절 소교량2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991-1	991-1	6.0	5.0	2019년 이후 추진
79	소교량	부절 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294-36	2294-36	8.0	3.0	2019년 이후 추진
80	소교량	대상 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1074-6	1074-6	8.0	3.0	2019년 이후 추진
81	농로	채곡길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191	191	30.0	3.0	2019년 이후 추진
82	소교량	서곡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566-4	566-4	7.0	2.5	2019년 이후 추진
83	소교량	용주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694	694	15.0	5.0	2019년 이후 추진
84	세천	울동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산62-1	산53	350.0	2.0	2019년 이후 추진
85	세천	장항마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907	907	1000.0	1.5	2019년 이후 추진
86	세천	중기마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산58	산18-23	500.0	1.5	2019년 이후 추진
87	취입보	다시내보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1046	1046	150.0	1.5	2019년 이후 추진
88	세천	산내상항마을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항리	1010	1010	200.0	1.5	2019년 이후 추진
89	세천	중기마을입구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1046	1046	200.0	0.0	2019년 이후 추진
90	세천	감식초공장 후단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1053	1053	200.0	0.0	2019년 이후 추진
91	세천	산내부운계곡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660	660	100.0	1.5	2019년 이후 추진
92	소교량	백일소교량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산40	산40	50.0	5.0	2019년 이후 추진
93	세천	바우배기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화정동		781	781	840.0	2.0	2019년 이후 추진
94	세천	상정제옆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785-48	785-48	630.0	2~5	2019년 이후 추진
95	세천	백뜰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128-3	161-3	420.0	5.0	2019년 이후 추진
96	세천	상정아래세천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785-48	785-48	150.0	1.5~2	2019년 이후 추진
97	농로	한우농로	전라북도	남원시	화정동		769-5	769-5	20.0	3~3.5	2019년 이후 추진

남원시 공고 제2018-361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노암동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3월 2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공동주택(아파트)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603-5번지 일원

나. 규 모

- 중로 2-21호선(B=15m, L=322m, A=5,050m²)

- 중로 3-31호선(B=12m, L=320m, A=4,418m²)

- 녹지 (연결도로 포함) 1,499m²

- 변경사항 : 아파트 부지 계획고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사항 반영(인접도로 채포장 및 인도확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남 김해시 번화1로67번길2 남명프라자 803호

- 성 명 :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병열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0. 01.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 : 따로붙임

6.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7.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사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일원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도로	계	성 명	주 소	
						도시계획	도시계획 외						
1	노암동	603-5	전	161	161	-	-	-	-	16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	노암동	604-1	전	67	67	-	-	-	-	6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	노암동	625-4	전	60	60	-	-	-	-	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4	노암동	636-11	전	78	-	68	-	-	-	68	국(재무부)		
5	노암동	834-0	전	34	-	34	-	-	-	34	국(재정경제부)		
6	노암동	834-6	전	7	-	7	-	-	-	7	국(재정경제부)		
7	노암동	609-16	답	89	89	-	-	-	-	8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8	노암동	612-12	답	33	33	-	-	-	-	33	남원시		
9	노암동	612-16	답	13	13	-	-	-	-	13	남원시		
10	노암동	612-22	답	162	162	-	-	-	-	1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1	노암동	612-23	답	50	50	-	-	-	-	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2	노암동	612-4	답	213	213	-	-	-	-	21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3	노암동	616-13	답	28	28	-	-	-	-	2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4	노암동	616-14	답	13	13	-	-	-	-	1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5	노암동	635-2	답	8	-	1	-	-	-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6	노암동	636-2	답	23	-	23	-	-	-	2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7	노암동	638-5	답	132	-	132	-	-	-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18	노암동	638-6	답	42	-	42	-	-	-	42	국(국토교통부)		
19	노암동	807-146	답	51	-	51	-	-	-	5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0	노암동	807-161	답	427	-	-	-	373	54	427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 도로	계	성 명	주 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외						
21	노암동	826-7	구	111	111	-	-	-	-	111	국(농림축산식품부)		
22	노암동	834-2	구	103	-	31	-	-	-	31	국(농림축산식품부)		
23	노암동	산56-1	임	3,430	41	-	-	-	-	4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4	노암동	603-6	대	143	143	-	-	-	-	14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5	노암동	608-4	대	1	1	-	-	-	-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6	노암동	608-5	대	12	12	-	-	-	-	1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7	노암동	624-4	대	81	81	-	-	-	-	8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8	노암동	629-4	대	66	66	-	-	-	-	6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29	노암동	642-1	대	86	86	-	-	-	-	8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0	노암동	643-3	대	65	65	-	-	-	-	6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1	노암동	644-3	대	240	240	-	-	-	-	2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2	노암동	644-5	대	21	-	-	-	21	-	2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3	노암동	645	대	400	239	-	-	79	-	3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4	노암동	826-20	대	41	41	-	-	-	-	4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5	노암동	834-3	대	9	-	8	-	-	-	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36	노암동	597-92	도	8,521	1,154	-	-	-	-	1,154	남원시		
37	노암동	607-4	도	2,409	667	-	-	-	-	667	남원시		
38	노암동	616-2	도	727	113	-	-	-	-	113	남원시		
39	노암동	624-3	도	6	6	-	-	-	-	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40	노암동	625-2	도	39	25	-	-	-	-	25	남원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 도로	계	성 명		주 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외						
41	노암동	625-3	도	10	4	-	-	-	-	4	남원시		
42	노암동	629-2	도	7	4	-	-	-	-	4	남원시		
43	노암동	630-2	도	231	178	-	-	-	-	178	남원시		
44	노암동	635-1	도	95	-	11	-	-	-	11	남원시		
45	노암동	636-9	도	79	-	58	-	-	-	58	국(국토교통부)		
46	노암동	643-2	도	49	3	-	-	-	-	3	남원시		
47	노암동	823-12	도	34	34	-	-	-	-	34	국(국토교통부)		
48	노암동	823-13	도	58	6	-	-	-	-	6	국(국토교통부)		
49	노암동	823-14	도	8	7	-	-	-	-	7	국(국토교통부)		
50	노암동	833-0	도	4,672	202	1	-	-	-	203	국(국토교통부)		
51	노암동	636-10	잡	136	-	136	-	-	-	13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52	노암동	636-12	천	14	-	14	-	-	-	14	국(국토교통부)		
53	노암동	636-4	천	28	-	19	-	-	-	19	국(국토교통부)		
54	노암동	636-5	천	208	-	207	-	-	-	207	국(국토교통부)		
55	노암동	807-1	천	142,930	-	29	-	-	-	29	국(국토교통부)		
56	노암동	807-157	천	52	-	14	-	-	-	14	국(국토교통부)		
57	노암동	807-58	천	5,531	-	3,663	-	-	-	3,663	국(국토교통부)		
58	노암동	636-6	계	112	-	112	-	-	-	112	국(국토교통부)		
59	노암동	636-7	계	35	-	35	-	-	-	35	국(국토교통부)		
60	노암동	807-148	계	219	-	-	140	67	12	219	국(국토교통부)		
61	노암동	807-159	계	288	-	117	97	74	-	288	국(국토교통부)		
62	노암동	807-160	계	819	-	-	-	779	40	819	국(국토교통부)		
합 계				173,817	4,418	4,813	237	1,393	106	10,967			
						5,050							

○ 지 장 물 조 서

순 위	지 번	형 태	지장물 포함규모 (도로선 내)		소 유 자		비 고
			규 모	면적 (㎡)	주 소	성 명	
1	609-4답	비닐하우스	35.8m×5.5m, 2동	197.0	노암동 644-1	오원섭	
2	612-1답	조립식건물 (스레트)	2.8~5.3m×4.4~9.6m	81.0	완주군 비봉면 눈기러기로 530	박종철	
3	604전	조립식건물	14.5m × 7.1m	103.0	향교동 346-1	김경주	
4	603-6대	주택 (슬래브, 스레트)	5.6m~11.6m×5.7m~9.7m 1.5m×2.7m	110.0	전남 순천시 안산길6, 5층	앤디디(주)	
5	826-20대	주택 (스레트)	5.3m × 4.2m 6.1m × 9.7m	82.0	전남 순천시 안산길6, 5층	앤디디(주)	
6	624-4대	주택 (슬래브)	6.5m~9.7m×10.0m~14.0m 1.5m×3.3m	131.0	전남 순천시 안산길6, 5층	앤디디(주)	
7	629-4대	주택 (슬래브)	11.8m~12.2m×7.7m~11.7m	210.0	전남 순천시 안산길6, 5층	앤디디(주)	
8	642대	주택 (스레트)	6.3m×13.5m	84.0	전남 순천시 안산길6, 5층	앤디디(주)	
9	644-1대	주택 (스레트)	9.0m×14.3m	129.0	노암동 644-1	오원섭	
10	645대	주택 (슬래브)	2.4m~3.8×5.6~7.8m	45.0	노암동 645	박정규	
합 계		10건					

남원시 공고 제2018-378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 부과할 세액을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기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15조)

-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15조(납기)----- ----- -----<u>20만원</u>----- ----- ----- -----.</p>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8 - 382호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 신청 추가 모집공고(안)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생산농가와 이너뷰티식품 가공기업과 연계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읍·면별 신청을 거쳐 사업대상 마을(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신청 모집합니다.

2018년 03월 08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생산농가와 이너뷰티식품 가공기업과 연계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 제공
- 이너뷰티식품 관련 창업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마을의 실질적 창업(법인화) 기회 제공

○ 사업규모 :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 추가모집 15개소

○ 사업기간 : 2017. 7. ~ 2018. 12.(18개월 간)

○ 사 업 비 : 1,000백만원(자부담 포함/ 자부담율 20%)

※ 지원단가 : 1개소당 최대 50백만원 한도(자부담율 20% 포함)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 읍·면 일원(동지역 제외)

※ 지원우선순위

①순위 :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주천면지역

②순위 : 기타 면지역

○ 신청대상자 : 농촌마을, 작목반(법인), 개인 등

※ 지원우선순위

①순위 : 마을단위, ②순위 : 작목반(법인), ③개인 등

○ 지원사업 내용

- 이너뷰티 관련 시설 또는 장비
- 참여 희망(마을, 업체)의 여건에 따라 기반인프라 지원
- ※ 예시) 자동제한기, 스테인레스 탱크, 세척설비, 사면파우치 포장기, 착즙설비 등

- 신청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지역개발부 및 해당 소재 읍·면사무소 접수

2. 추진 일정

- 공고기간 : '18. 3. 8 ~ 3. 19일 까지(12일간)
- 서류접수 : '18. 3. 19일 18:00 까지(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지역개발부 및 해당 소재 읍·면사무소 접수제출)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18. 3. 30일 까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모집결과 계획 사업량이 미달(개소) 되거나 이너뷰티 식품과 관련이 없고 사업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추후(2018년 수시) 재공고 및 추가선정

3. 선정 방법

- 평가체계 : 신청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마을, 작목반(법인), 개인 등 선정
 - 서면평가(50점) : 공동체 여건, 자원의 다양성,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계량과 비계량)
 - 현장평가(50점) : 1차 서면평가 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현장 실사 평가
 - ※ 공모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발전가능성, 추진의지 등 마을주민·대표 등 필요사항 질의응답식 인터뷰, 사업장 예정부지 확인 등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기준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계획과 이너뷰티식품 생산 및 유통

과 밀접한 관계(원료 · 가공 · 유통 등)가 있고, 사업성과 발전가능성 등 평가

- 1차 서면평가(50점)와 2차 현장평가(50점)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각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평가요령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회 개인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

* 추후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

○ 기타사항

- 모집공고(안) 관련 기타사항에 대하여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계 (063-620-6394) 및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지역개발부(063-620-20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남원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남원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명 : 남원시 OO읍·면						
신청인정보	마을명(법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창업희망소재지					
	설립일		사업기간			
	대표 연락처		063-010-		Fax 063-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성명 : 직책 : 휴대폰 :		직통번호 :063- 이메일 :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농업 <input type="checkbox"/> 임산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수산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연관산업				
제품정보	주요 생산 제품	제품유형 (품목)				
		생산량 (톤, BOX등)				
	매출 현황	년도	2014	2015	2016	
		금액(백만원)				
주요거래처		1.	2.	3.		
생산제품						
인증·지정·확인서 보유현황						
사업계획	주요 생산 품목/규모(ton)					
	생산 예정제품					
	계획 시설					
	사업비 (자부담 20% 포함)		총 원(보조 : , 자부담 :)			
	참여 가구수					
	기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출하오며, 동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정보(기업·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2018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남원시장 귀하						

* 지원우선 순위 :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계획에 따름
 1. 마을단위 → 작목반(법인 등) 순으로 하며,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개인 지원 가능
 2.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주천면 → 기타 관내 면지역 순으로 함(동지역 제외)

주요시설 현황 및 사업계획

I. 기존 생산시설 현황

신청일 현재

시설규모		면 적(m ²)	현 황	
생산 시설	주요 보유 장비			
	기존 시설 현황			
주요생산품목			생산량	
사업장 전경		〈외부 전경〉		〈내부 전경〉

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위 치 :

나. 참여단체

○ 단 체 명 :

○ 참여인원 :

○ 참여형태 : (마을단위, 작목반, 개인 등 참여형태) 등

2. 주요생산 품목

가. 생산 원료

○

○

나. 제품명(생산품 유형)

○

○

다. 생산 예정량

○

○

라. 매출예상액(연간) 등

○

○

3. 희망시설

사업명	희망 시설(장비)		사업비(천원)			비고
	시설내용(장비)	시설규모	합계	보조	자부담	

4. 운영계획

가. 운영 및 유통계획

○

○

나. 주요출하처(유통방법) 등

○

○

5. 기타 사항

※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제안 등 자유롭게 서술

남원시 공고 제2018-383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연장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항 신설 (안 제2조)

나.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 시각장애인(4급), 문화재,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

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6조)

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 보

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
 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
 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신설>

----- 2020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
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③ (생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2020년 12월 31일 -----

----- 2020년 12월 31일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 2020년 12
월 31일-----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